

광주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단5535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9. 1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21,107,1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07,1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주성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D 제1층 E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D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F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26.61㎡ 주택(2세대)

2층 131.30㎡ 주택(2세대)

3층 131.30㎡ 주택(2세대)

4층 118.27㎡ 주택(2세대)

지층 126.61㎡ 주차장 65.31㎡

주택(1세대) 61.3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관악구 D 대 23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59.8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31분의 26.91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 라 합니다)로부터 소외 C(이하 'C' 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법인입니다.

2) 피고는 C의 어머니로서, 소외 망 H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 C은 G와 신용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사용 후 대금을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의 약정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체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갑 제2호증 - 회원가입신청서 갑 제3호증 - 특수채권원장조희, 갑 제4호증 - 채권계산서)

- 아 래 -

(기준일자: 2021. 12. 17.)
(단위: 원 %)

품 목	대출날짜	대출원금	잔존원금	인수전이 자	인수후이 자	합계	연채이자율
신용카드대금	2017-07-21	4,428,086	4,428,086	2,244,076	741,249	7,413,411	23.5%
장기카드대출	2017-11-24	5,000,000	1,875,005	773,389	271,397	2,919,791	20.32%
장기카드대출	2018-04-30	5,300,000	2,355,560	902,958	317,129	3,575,647	18.9%
장기카드대출	2018-06-20	3,500,000	2,770,835	1,246,181	437,579	4,454,595	22.17%
장기카드대출	2018-07-30	2,500,000	1,770,838	720,066	252,788	2,743,692	20.04%
합 계			13,200,324	5,886,670	2,020,142	21,107,136	

2) 이후 G는 원고와 2021. 4. 21.자 자산매매계약에 의거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 자산양수도계약서, 갑 제6호증 - 채권양도통지서)

3) 이에 원고가 소외 C의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액은 2021. 12. 17. 기준 금 21,107,136원과 그 중 4,428,086원에 대하여 2021.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1,875,005원에 대하여 2021.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32%, 2,355,560원 에 대하여 2021.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9%, 2,770,835원에 대하여 2021.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17%, 1,770,838원에 대하여 2021. 12. 18.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0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사해행위 및 C의 무자력

1) 위와 같이 C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와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2) 우리법원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C의 악의 및 피고의 악의 추정

1) 우리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적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C과 피고는 모자관계로써 피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충분히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5. 원상회복의 방법 : 가액배상

1) 따라서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11. 6.자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

66416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1999. 9. 5. 선고 98다41490 판결), 기존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 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 B와 C이 2019. 1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 조합로 하는 채권최고액: 78,000,000원(잔액없음), 채권최고액: 71,500,000원(대출잔액: 105,000,000원), 채권최고액: 6,500,000원(대출잔액: 5,000,000원), 채권최고액: 39,000,000원(대출잔액: 40,000,000원) 도합 4건 채권최고액: 195,000,000원(대출잔액: 150,000,000원)이었으나,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직후에 위 근저당권을 피고가 모두 계약인수하는 방식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2020. 5. 26.자로 변경설정이 된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내에서 협의분할 약정의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240,000,000원 상당¹⁾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외 C의 상속지분 가액은 25,714,285원[부동산가액 240,000,000원 - 150,000,000원(근저당권대출잔액) = 90,000,000원 * 2/7(상속지분) = 25,714,285원]이며,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금 21,107,136원이라 할 것이므로, C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11. 6.자 협의분할약정은 금 21,107,1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21,107,136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해행위당시 2019. 11. 6. 기준 실거래가 없어 가장 가까운 거래인인 2019. 7. 27.자 실거래가액으로 하였습니다.

